

圖書館의 相互貸借制度



오래 前부터 論議되어 오던 圖書館間의 相互貸借制度가 마련되었다.

圖書館이 閱覽奉仕를 위해서 보다 더 많고 必要한 資料를 손쉽게 利用者에게 提供 한다는 것은 圖書館 相互間에 바람직한 奉仕活動의 하나로서 圖書館 相互間에 望하여 오며 바다. 多幸히 國立中央圖書館이 主管하여 會員圖書館 相互間에 圖書館 資料의 相互貸借를 위하 協定을 締結하게 되고 지난 1968年 11月 20日부터 本協定을 施行하게 되었다.

이에 本 制度의 利用과 會員加入 案內를 위해서 그 概要를 紹介한다. (編輯者 註)

1) 相互貸借制度란 무엇인가?

「相互貸借」란 그 文字가 뜻하는 바와 같이 圖書館 相互間에 必要한 資料를 서로 빌려 주거나 빌리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自己가 찾아간 圖書館이 가지고 있지 못한 資料를 所藏하고 있는 다른 圖書館에서 빌려 볼 수 있는 制度를 말한다.

2) 相互貸借制度의 目的

圖書館의 規模에 依한 制約, 特殊化, 專門化, 圖書의 稀覯性, 圖書館의 經費等 事情때문에 中·小圖書館은 勿論 大圖書館일지라도 그 館의 利用者가 希望하는 圖書를 하나도 빠짐 없이 蒐集한다는 것은 極히 困難하다. 그러므로 相互貸借의 目的은 調査·研究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 圖書館에 없는 資料를 貸出圖書館의 本來의 利用者의 權利를 害치지 않는 範圍內에서 빌려다가 自館 利用者에게 閱覽케 함으로써 圖書館奉仕의 萬全을 期하고자 하는 奉仕制度의 하나이다.

3) 相互貸借 對象 圖書

相互貸借의 對象이 되는 圖書에는 그 限界가 있다. 卽 現代文學書, 容易하게 求할 수 있는 圖書, 教科用 圖書, 參考圖書, 性質上 特殊한 包裝이 必要한 圖書·樂譜·原稿·論文·新着 定期刊行物·稀貴書 등은 對象에서 除外되는 것이 普通이다.

4) 相互貸借制度를 통한 圖書의 貸借方法

① 借用하고자 하는 圖書의 所在를 어디서 찾는가?

借用하고자 하는 圖書가 어느 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는가를 먼저 確認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 綜合目錄이 없으므로 所在를 알기 어려우나 圖書館의 司書職員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며, 또 司書들은 즐겁게 문의에 협조해 줄 것이다.

② 圖書貸借 手續

必要한 資料(圖書)의 所在가 確認되면 閱覽係(또는 貸出係)에다 그 要旨를 말하고 「相互貸借要請書」에 必要한 事項을 빠짐없이 記載한 後 係員에게 提出한다. 係員은 提出받은 要請書에 따라 關係 圖書館에서 引受한 後 要請者에게 빌려 주게 된다. 만일 그 圖書가 어떤 理由에서든지 貸出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事由가 要請者에게 通報된다.

③ 貸借要請者의 義務

協定 第8條에 明示된바에 따라 貸出期間 14日을 嚴守하여야 하며, 圖書를 破損해서는 안되며, 清潔하게 利用하여야 한다.

借用한 圖書는 他圖書館으로부터 貸出해 온 資料이며 다른 사람이 빌려갈 性質의 圖書라는 점을 特別히 留意하여야 한다.

이 制度에 따라 지금까지 利用할 수 없었던 資料를 利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充分히 認識하여 協定書에 定해진 諸規則을 遵守하여 積極的으로 協助하여야 한다.

圖書館資料 利用 및

相互貸借에 關한 協定

第1條 (目的) 本協定은 學術研究와 調査에 必要로 하는 圖書館 資料를 圖書館 相互間에 利用 貸借하는데 必要한 事項은 協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圖書館 資料) 圖書館 資料라 함은 圖書 記錄 視聽覺 資料 國家 및 地方行政 資料 鄉土 資料 및 其他 必要한 資料(以下 資料라 함)를 말한다.

第3條 (貸出 資料) 貸借 資料의 範圍는 貸出 圖書館의 規程에서 館外貸出이 許可된 資料에 限한다. 그러나 館外貸出이 制限된 資料라 할지라도 可能한 限 館內利用을 許容토록 한다.

第4條 (資料貸借의 要件) 資料의 貸借에 있어서는 다음 事項을 履行하여야 한다.

1) 貸借한 資料의 모든 責任은 貸借日로부터 返納日까지 借用 圖書館이 진다.

2) 貸借한 資料의 紛失이나 汚損이 있을 때에는 그 修理·再製本 또는 代替에 要하는 費用은 借用 圖書館이 負擔한다.

3) 借用 圖書館은 資料의 安全管理을 위하여 貸出 圖書館에서 賦課하는 모든 事項을 嚴守하여야 한다.

第5條 (費用의 負擔) 相互貸借에 必要한 費用(往復送料包裝料)은 借用圖書館이 負擔하되 先納하여야 한다.

第6條 (貸借資料의 要請) 貸借코자 하는 資料는 別紙 相互貸借 要請書에 依하여 申請한다.

第7條 (要請資料의 記載事項) 借用코자 하는 資料를 申請할 때에는 正確하고 完全한 書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外國 資料라 할지라도 要請 資料에 쓰인 言語를 그대로 記載하여야 하며 그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圖書資料
 - ① 完全한 著者名 (人名 또는 團體名)
 - ② 確實한 書名
 - ③ 特別한 版을 必要로 할 境遇에는 版次
 - ④ 出版事項(出版地名, 出版社, 出版年度)
 - ⑤ 한 帙冊중의 特定 卷號일 경우는 正確한 卷號數
 - ⑥ 叢書中の 特定圖書일 境遇에는 正確한 卷號數

2. 繼續 刊行物
 - ① 正確한 標題(書名) ② 卷號
 - ③ 發行年月日
 - ④ 알 수 있을 경우에는 必要한 論文의 項數
 - ⑤ 必要한 論文의 著者 및 書名

第8條 (貸借期間) ①貸借期間은 資料 貸出日로부터 起算하여 14日 以內로 한다. 다만 相互圖書館의 諒解가 成立되었을 때에는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②前項의 貸借期間을 延長 하고자 할 때에는 借用圖書館은 貸借期間 滿了 3日前에 第6條의 規定한 樣式에 依하여 貸借 圖書館의 合議를 얻어야 한다.

第9條 (返納 要求) 貸出 圖書館은 貸出한 圖書가 特別한 事情에 依하여 必要한 때에는 返納을 要求할 수 있다.

第10條 (調整委員會) ①本 協定の 効果의인 履行을 위하여 國立中央圖書館에 調整委員會를 둔다. ②前項의 調整委員會는 國立中央圖書館을 包含하여 7個 以內의 圖書館으로 構成하되 그 選出에 있어서 는 館種을 勘察하여야 한다. ③ 調整委員會 委員 圖書館은 1年마다 交替한다. ④ 調整委員會는 委員 圖書館의 參席으로 開會하고 參席 圖書館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11條 (調整委員會 機能) 調整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管掌 審議한다

- 1) 全體 會議의 召集
- 2) 協定 圖書館의 紛爭, 意見 對立의 調整
- 3) 全體 會議에서 委任된 事項.
- 4) 其他 協定の 履行, 運營에 關한 細部의인 事項

第12條 (全體 會議) 協定 圖書館 全體 會議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 議決하되 全加入 圖書館의 3分の

2以上の 贊成으로 한다
1) 新規加入 및 除名에 關한 事項
2) 協定 改定에 關한 事項.
3) 調整委員會에서 解決되지 못하는 事項.
4) 其他 協定の 基本運營에 關한 事項.
(施行日) 本 協定은 本 協定을 發起한 各 圖書館이 署名한 協定書를 國立中央圖書館에 寄託함으로써 效力을 發生한다.

圖書館資料利用 및 相互貸借에 關한 協定 施行細則

第1條 全體 會議의 議長 圖書館은 委員의 互選으로 選出한다. 議長은 會議를 召集 主宰하고 會議를 統理한다. 議長 有故時는 議長이 指名하는 會員 圖書館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2條 調整委員會의 代表 圖書館은 國立圖書館이 된다. 代表 圖書館은 委員會를 代表하여 委員會를 召集하고 會務를 統理한다.

第3條 調整委員會의 審議 議決된 事項을 執行하기 위하여 幹事 1名을 둔다. 幹事는 國立中央圖書館의 閱覽課長이 된다.

第4條 全體 會議 및 調整委員會에 出席한 委員에게는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第5條 全體 會議는 定期 會議와 臨時 會議로 한다. 定期 會議는 年 1回(1月中) 開催하고 臨時 會議는 委員 3分の 2 以上の 要求가 있거나 議長 圖書館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이를 開催한다.

第6條 調整委員會는 每月 15日(土曜日 日曜日인 경우는 다음 月曜日) 國立中央圖書館에서 開催한다.

第7條 本 協定 施行을 위한 經費는 會費, 補助金 등으로 充當한다. 上記 經費의 收入 및 支出은 調整委員會를 經由하여 全體 會議의 議決에 따라 執行한다.

第8條 本 協定の 會計年度는 政府施行年度와 같다.

第9條 幹事는 會計年度에 經費支出明細書를 調整委員會를 經由 全體 會議에 提出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10條 圖書館 資料의 借用을 要求하는 圖書館은 同 協定 第7條 및 第8條의 規定에 依한 記載 事項을 記入한 相互貸借 要請書를 作成하여 貸出 圖書館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11條 前條에 依한 相互貸借 要請書를 接受한 貸出 圖書館은 3日 以內에 處理하여야 한다.

第12條 資料 借用에 따른 手數料는 原則적으로 無料로 하되 貸出 圖書館의 貸出規定에 따라야 한다.

附 則 本 施行細則은 1968年 11月 20日로부터 施行한다.